##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46

발의연월일: 2024. 7. 23.

발 의 자:임오경・이기헌・김재원

박 정 • 한민수 • 박수현

임미애 · 강유정 · 윤후덕

서영교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한 식당 점주가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서비스요구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낮을 별점을 주겠다는 사실상 협박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함.

인터넷 발달과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소비자 이용후기가 악성 소비자행태(블랙컨슈머)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, 소비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,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 등 불공정 소비행위가 금융·관광·유통 등 다양한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.

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.4%의 업체가 블랙 컨슈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83.7%의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불 가피하게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이에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책무를 개정해 소비자가 기본적 권

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자 하는 것임(안 제5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"행사하여야 한다"를 "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조(소비자의 책무) ① 소비자	제5조(소비자의 책무) ①		
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			
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			
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			
선택하고, 제4조의 규정에 따른			
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			
하게 행사하여야 한다.	<u>행</u> 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		
	유지하여야 한다.	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